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290267(본소), 2023가단315814(반소) 판결
[용역비 청구 등의 소 ·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김명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02,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5.부터 2024. 11.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40%, 피고(반소원고)가 60%를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9,934,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2. 29.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9. 30. 피고와 광주시 C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동 및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는 설계계약을 총 2억 6,300만 원에 체결한 사실, 설계용역 대금은 계약시에 20%, 건축심의도서를 포함한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 건축허가 승인도서를 포함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25%, 사용승인도서 제출시 5%를 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260만 원을 받고 측량 등 설계용역을 착수한 사실, 원고는 2022. 12. 3. 피고 측을 찾아가 원고가 작성한 지상 1층 평면도를 가지고 건축될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설명하던 중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서쪽 부분 계단 설치 여부 문제에서 피고 측과 의견이 갈린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만나지 않았고 건물 설계 작업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설계 작업이 계약대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작업이 중단된 때까지 원고가 행한 설계작업의 성과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금에 대하여 갑 3호증의 1부터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12. 무렵 심의도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심의도서를 포함한 계획설계도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설계용역 대금으로 계획설계도서 제출시에 받기로 한 금액의 70%를 인정한다.

원고는 심의도서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설계도서의 60% 정도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설계작업은 2022. 12. 무렵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갑 4호증의 1부터 3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설계작업을 중단할 무렵 중간설계도서가 60%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2. 12. 3. 설계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갑 18, 2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병률